네이버 주식회사

ESG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1-03-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 내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기반으로 장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이용자, 구성원, 주주, 파트너,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SG 관련 활동"은 회사 경영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며,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한 손실로 인하여 회사에 운영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 내지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다음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1. 환경: 친환경 이커머스 생태계 조성, 환경영향 관리
- 2. 사회: 중소상공인과 창작자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정보보안·프라이버시·표현의 자유, 미래 역량 개발과 기술 혁신, 인권 존중, 인적자본 경쟁력 강화, 다양성·포용성 확보, 공정 거래 관리강화
- 3. 지배구조: 지배구조 선진화(정확한 투자 정보의 공개, 주주와의 소통 확대 등), 주주 친화 경영,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원칙,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투명성 안정성 확보, 윤리경영 관리 강화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제2조의 "ESG 관련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ESG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결정 및 승인하며, 그 활동을 관리·감독·평가·검토하고,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최종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의무)

위원회 위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운영지침)

이 운영규정의 제 ·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장. 구성

제7조(위원)

- ①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수 또는 사외이사의 구성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정함이 없을 경우 최초 이사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사무국)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사무국은 회사의 각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한다.
- ② 위원회 및 각 사무국의 업무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회사의 법무, 재무, 인사 부서를 포함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정보 및 업무현황 자료 요청 및 업무 협업 요청을 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의 조직장은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 ④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할 직원 수명을 사무국에 둘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0조(회의의 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3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하되, 회의 소집 시 그 소집일자를 결정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본 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아닌 위원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은 제1항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소집절차)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개최 시기 및 장소 그리고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일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결의의 유형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

- 1. 승인: 원안의 내용과 다름 없이 가결함
- 2. 수정 승인: 원안의 내용 중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 승인함
- 3. 보완: 원안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보완을 지시하고, 차기 위원회에서 반드시 재결의 함
- 4. 부결: 원안의 내용 전체에 대하여 부결하며, 동일한 사업년도 위원회에 재부의할 수 없음
- 5. 보고완료 : 보고사항의 보고를 완료함
- ③ 위원회 결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의사항과 관계된 임·직원 및 외부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사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결의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 4 장. 부의사항

제 15 조(부의사항의 종류)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아래 각호와 같이 결의사항, 보고사항, 논의사항으로 구분한다.

- 1. 결의사항: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 수정승인, 보완, 부결로 결의함
- 2. 보고사항: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결의에 갈음함
- 3. 논의사항: 차기 이후 회의에 부의될 사항으로 사전 논의가 필요한 경우 부의하며, 결의 를 요하지 않음

제 16 조(결의사항)

- ① 위원회는 아래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
 - 1. ESG 활동 관련 정책의 수립,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주요 ESG 중장기 목표 설정: 중장기 사업목표와 연계된 ESG 목표 및 비전 설정나. 주요 ESG 활동 필요사항 및 쟁점 파악: 외부 ESG 평가에 따른 취약점 등 ESG Risk 파악 및 ESG 연관 사업 및 투자 등 ESG 활동 기회 파악
- 2. ESG 활동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 3. 회사의 ESG 관련 활동의 구체적 실행 계획 심의 및 승인
 - 가. ESG Risk 개선 활동
 - 나. ESG 관점의 사업 및 투자 활동
 - 다. 기타 ESG 관련 활동
- 4. 회사의 ESG 관련 활동에 대한 정기/수시 평가 및 개선
 - 가. ESG 위원회 운영규정의 준수여부 및 ESG 관련 기준 및 제반 규정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나. 위원회 결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필요 사항 검토
- 다. ESG 활동으로 인한 개선 정도 모니터링, 평가 및 지속 개선 필요과제 선정
- 5. 회사의 ESG 관련 대외 Communication, PR, 공시보고서의 심의 및 승인
- 6. 건별 10억 원 이상의 사회공헌 집행. 단, 긴급 재난 구호와 관련된 부득이한 경우 대표이사가 선집행 후 사후보고 할 수 있음
- 7.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의해 또는 대표이사가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 17 조(보고사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 16조 결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위원 및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 18 조(결의사항의 통지)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